

DDA, 2007년 8월 농업협상 동향

주 헌 정*

WTO 회원국은 지난 7월 17일 크로포드 펠코너(Crawford Falconer)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발표한 개정된 세부원칙(Modalities)의 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7월 24일 농업부문 비공식 특별회의를 개최하였다.

비공식 특별회의 결과 회원국들은 펠코너 의장의 문서가 각국의 입장차를 좁히는데 기여하고 있다고는 하였으나 완전히 채택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펠코너 의장은 회의 결과로 수렴된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9월 3일 이후 비공식 및 공식적인 회의와 심의회를 거친 후 모델리티 초안의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 7월 24일 농업부문 비공식 특별회의 결과

7월 24일 열린 하루 동안의 회의에서 51개의 회원국은 대체적으로 펠코너 의장의 모델리티 초안 내용에 대하여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회원국들은 일부 분야에서는 자신들이 고수하고 있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9월 초에 추가의 개정을 위해 열릴 회의에서 이 부문에 대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hj1013@krei.re.kr 02-3299-4262

특히, 케언즈 그룹 등의 농업수출국들은 농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 장벽과 무역왜곡보조(OTDS)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G-10과 같은 농산물 수입국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를 더 느끼며 초안 문서에 그들을 위한 내용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회원국들이 수많은 시장접근의 현안이 여전히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팰코너 의장은 이러한 원인은 이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스위스는 의장의 초안 문서에 대하여 기각되지 않을 만큼은 좋지만 채택되기에 부족하다고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인도는 이 문서가 협상의 현실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하였으며 회원국들에게 협상의 방향을 잡아주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1.1. 시장접근

이 분야는 협상국들의 관심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가장 힘든 영역으로 남아있다. 소규모취약경제(SVE)국만이 적당한 감축과 유동성을 위한 다양한 틀을 제시받아 이 문서에 대해 흡족해했다.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일부 개도국, 케언즈 그룹은 회원국들을 일반적인 감축 수준에서 이탈하게 하는 다양한 유연성에 대한 의견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강경개도국 국가인 G-20은 가장 높은 관세에 대한 상한을 요구하였으며 민감 품목의 대우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나 더 많은 시장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 개발도상국의 시장접근, 특히 특별품목 (Special Products)¹⁾, 특별세이프가드(SSG; Special Safeguard)²⁾, 경사관세(tariff

1)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을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이 정할 수 있는 상품 품목

2)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입물량이 일정수준 이상을 초과하거나 국제가격이 일정수

escalation)³⁾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으로의 접근이 어려움을 말하였다.

G-33과 이와 유사한 회원국들은 일부 특별품목의 관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특별세이프가드를 유지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G-10 그룹은 관세형태의 조합과 추가적인 유연성에 관한 조건이 너무 큰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순수 식량 수입업자들은 자유화를 위하여 이미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한다.

1.2. 국내보조

수많은 개도국과 케언즈 그룹은 관세 허용 상한을 단지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무역왜곡보조(OTDS)⁴⁾의 삭감을 요구하였다. G-20 그룹은 AMS와 Blue Box의 특정 수준에 대한 효과적인 방침과 OTDS를 10단위로 낮출 것을 반복하여 주장하였다.

1.3. 수출경쟁

신용과 보험 같은 수출 경쟁력강화를 위한 수출자금지원 시스템과 수출국의 독점력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안에 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1.4. 기타 이슈

많은 개도국이 고관세에 대하여 관세 상한을 요구하였다. 한편 EU와 스위스는 지리적 표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였다.

준 이하로 하락 시에 자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

- 3) 농산물 가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공도가 높을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현상
- 4) 감축의무 또는 제약이 따르는 감축보조(AMS), 감축면제보조(De-minimis), 과도기적 보조(Blue Box)를 합친 국내무역보조금을 일컫음.

2. 주요국별 반응

일본은 그 동안 강력히 도입을 반대해온 관세 상한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만족하였으나, 민감 품목의 수 및 취급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했다. 즉, 민감 품목의 수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유세(有稅)품목(일본은 1,013품목)이 아닌 전체 품목(1,332품목)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관세를 철폐하고 시장개방을 추진해온 국가일수록 유세품목은 적어지고 불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민감 품목의 수를 유세품목의 6% 혹은 8%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특례에 대해서도 조건이나 대가를 없애도록 요구했다. 조건은 2가지가 있는데, 모두 일본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감 품목을 확대할 대가로서 저(低)관세수입 범위의 추가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은 의장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관세 상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등 강경 개발도상국(G-20)은 민감 품목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며, 저관세수입 범위도 “줄여야 할 특례가 너무 많다”고 호소하였다. 한편, 미국 이외 국가들은 미국의 국내보조금의 총 한도액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시장개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EU는 중요품목 이외의 일반품목의 관세삭감률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였다. 저관세 수입범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EU는 일본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⁵⁾

한국은 회원국들의 다양한 이해를 세부원칙 초안에 반영하려 한 의장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였다. 즉, 세부원칙

5) 일본농업신문 2007년 7월28일

초안에 개도국의 특별품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 수준과 지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고관세 구간의 품목 수가 많은 경우(100% 이상, 세번수 5% 이상) 추가적으로 TRQ를 증량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 정부는 세부원칙 초안을 심층 분석하여 연내협상타결을 염두에 두고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와 관심 사항이 유사한 G-10, G-33과의 공조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 설명하였다.⁶⁾

3. 향후 일정

팰코너 의장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검토한 후 9월 3일에 회의를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다. 인위적인 마감시한은 없지만 이 시기는 모델리티 초안의 추가적인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였다.

표 1 WTO 협상 관련 주요 일정, 2007년

일정	회의명	내용	장소
09/13-14	무역과 개발에 관한 WTO 위원회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관한 리뷰	Lima
09/19	무역과 개발에 관한 WTO 위원회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관한 리뷰	Manila
09/25	무역과 개발에 관한 WTO 위원회	무역보조에 관한 세션	Geneva
10/01-02	WTO	아프리카의 지역적인 회의	Dar es Salaam
10/04-05	WTO	WTO가 세계화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공공포럼	Geneva

6) 농림부 보도자료 07.30.

9월 3일 오후 펠코너는 전체 회원국과 비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9월 4일부터 21일까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회원국과 주요 회원국들을 포함하여 비공식적인 심의회를 열 예정이다.

협상은 남아있는 이슈를 해결하는데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이슈에는 경사관세, 수입쿼터관리, 특별품목, 특별세이프가드, 열대작물, 특혜(관세)잠식 (Preference Erosion)⁷⁾ 등이 있다.

한편, 회원국들은 8월 기간 동안 공식적인 회의는 없으나 9월 정식회의를 대비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인 회의를 소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농림부 농업협상과, 보도자료 2007. 07. 30

일본농업신문(日本農業新聞) 2007년 7월28일자

Geneva Watch Vol.7. no. 28/29

Washington Trade Daily Vol.16. no. 155

7) 일부 품목을 낮은 특혜관세로 EU 등 선진국에 수출하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의 소규모 국가에서 주로 일어남.